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무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27

발의연월일: 2021. 3. 16.

발 의 자: 한무경・이주환・金炳旭

윤창현 • 서일준 • 엄태영

권명호 · 구자근 · 조수진

최승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(이하 '아이디어 탈취', 제2조제1호차목), 국내에 널 리 인식된 표지의 오인·혼동행위(제2조제1호가목·나목)를 부정경쟁행 위로 보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고, 선의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·유사한 표지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해서까지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손해배상, 침해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선의의행위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음.

이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·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,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아이디어탈취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, 또는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(안 제14조).
- 나.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에서 나아가 디지털 파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'자료'로 확대(안 제7조제1항).
- 다.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환수법 제정에 따라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,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제20조의 과태료 기준이 규제가 아니라는 규제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제일몰규정을 삭제(안 제9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2 삭제).
- 라.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또는 영업주체 혼동야기행위(제2조제1호 가목·나목)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등의 민·형사적 책임을 면제(안 제6조의2 신설, 제13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).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부정경쟁행위 선의자에 관한 특례) 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(그 승계인을 포함한다)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,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타인은 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 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"관계 서류나 장부·제품 등"을 "관계 자료나 제품 등" 으로 한다.

제9조의4제2항 중 "명할 수 있다"를 "명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선의자에 관한 특례)"를 "(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)"로 한다.

제14조 전단 중 "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

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"를 "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행위가"로, "영업비밀 보유자가"를 "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"로 한다.

제17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3항제1호 중 "부정경쟁행위를"을 "부정경쟁행위(제6조의2제1항에서 허용한 범위의 사용은 제외한다)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6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6조의2(부정경쟁행위 선의자에
	관한 특례) ① 제2조제1호가목
	또는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더
	라도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
	리 인식되기 전부터 동일하거
	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경쟁의
	목적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
	(그 승계인을 포함한다)에는 제
	4조부터 제6조까지, 제7조 및
	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	② 제1항의 타인은 제1항에 따
	른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
	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
	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
	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
	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제7조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	제7조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
등) ① 특허청장, 특별시장ㆍ광	등) ①
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	
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	
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・	
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	
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2조	
제1호(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)	

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, 제3 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 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 ·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 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략)

- 제9조의4(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) ① (생 략)
 -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 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~ ⑥ (생 략)
- 제13조(선의자에 관한 특례) ①· ② (생 략)
- 제14조(시효) <u>제10조제1항에 따라</u> <u>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</u> 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

	관계 자료나
	제품 등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9조의4(원본증명기관에 대한
	시정명령 등) ① (현행과 같음)
	②
	<u>명</u> 하
	여야 한다.
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	13조(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
	<u>관한 특례)</u> ①·② (현행과 같
	<u>ㅇ</u>)
제	14조(시효) <u>제4조제1항에 따라</u>

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

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

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 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 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(時 效)로 소멸한다.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 에도 또한 같다.

제1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특허청
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
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제9조의4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

제18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기준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2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

수 있는 권리 또는 제10조제1
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
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
수 있는 권리는 그 행위가
<u>영업상의 이</u>
익을 침해당한 자가
<삭 제>

제18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 -----

에 처한다.

- 1. 제2조제1호(아목, 차목 및1.카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<u>부정</u>-경쟁행위를 한 자2
- 2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
	_	_	_	_	_	_	_	
_	Т	_	_	_	_	_	_	

1. -----

------<u>부정</u> 경쟁행위(제6조의2제1항에 따 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)를-----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